

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-209호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자의 분할승인 사항을 공고합니다.

2022년 6월 15일
금융위원회 위원장

- 다 음 -

1. 대상회사

(1) 분할회사

- 상 호 : 한국투자신탁운용(주)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(여의도동, 전경련회관)

(2) 분할신설회사

- 상 호 : (가칭)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(주)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(여의도동, 파크원)

2. 승인내용

- 분할방법 : 한국투자신탁운용(주)이 존속하면서 분할 후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을 100% 소유하는 상법상 물적분할
- 분할 후 존속회사 : 한국투자신탁운용(주)

- 분할 후 신설회사 : (가칭)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(주)

3. 승인조건

가. 분할과 관련된 제반 절차를 관계 법령에 따라 이행하고 분할완료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할 것

나. 분할회사는 분할등기 후부터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로 이관한 업무로서 다음의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업무는 영위하지 않을 것

(1)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2호·제3호에 따른 부동산·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(단, 자본시장법 제234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는 제외)

(2)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2호·제3호에 따른 부동산 및 특별자산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(단, 자본시장법 제234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및 투자대상자산이 제234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따른 부동산·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인 경우는 제외)

4. 승인일 : 2022. 6. 9.